

의안번호	2212634
의 퇴 인	용혜인의원
회 답 일	2025. 10. 24.
추 계 번호	25D4759

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1조(생활동반자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관리 등)	생활동반자관계등록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전산정보자료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·작성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32조(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)	가정법원장 및 가정법원지원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하여야 함	의무규정
3	안 제33조(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)	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심사를 거쳐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	의무규정
4	안 제34조(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기재사항 등)	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는 등록부 등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발급함	의무규정
5	안 제35조(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교부 등)	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 등은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교부 등을 청구할 수 있음	재량규정
6	안 제36조(인터넷에 의한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 발급)	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 발급사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음	재량규정
7	안 제37조(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 발급)	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 발급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1조(생활동반자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관리 등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32조(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사무의 처리 등)	
3	안 제33조(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)	
4	안 제34조(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기재사항 등)	
5	안 제35조(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의 교부 등)	
6	안 제36조(인터넷에 의한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 발급)	
7	안 제37조(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생활동반자관계증명서 발급)	

2. 상세 사유

□ 생활동반자 관계 등록 및 증명(안 제31조 ~ 제37조)

- 제정안은 성년이 된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일상생활, 가사 등을 공유하고 서로 돌보고 부양하는 관계(이하 “생활동반자관계”라 함)에 있는 사람을 생활동반자로 정의하고, 그 성립·해소 및 효력과 그에 관한 등록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
- 제정안에 따라, 생활동반자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·증명 사무 처리를 위한 전산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다만, 생활동반자관계등록부의 작성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록 및 증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, 개인 간 합의에 따라 성립되는 생활동반자 수와 생활동반자관계등록업무전산화(정보화) 구축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 - 참고로 대법원 「가족관계등록사무」 사업의 2025년 예산은 114억 7,900만원, 「가족등록업무전산화(정보화)」 사업의 2025년 예산은 174억 5,600만원이며, 행정안전부의 「주민등록제도 개선 및 운영」 사업의 2025년 예산은 1억 6,100만원임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임지원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지원	02-6788-4664	img1@assembly.go.kr